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합의)의 적정한 참작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지	원실(형사지원심의관)	성 명	정재우
연 구 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진국)			
연구기간	2023. 7. 31. ~ 2023. 11. 30.			
연 구 금 액	2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현행 법질서 내 형사절차상 피해 회복 프로그램 유형 검토 및 양형 기준에서 처벌불원(합의) 취급 방법 조사 ○ 외국의 형사절차 및 양형에서 처벌불원(합의) 취급 방법 소개(미국, 일본, 독일의 법제 하에서 형사절차상 처벌불원의 취급, 양형단계에서 처벌불원(합의)과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실시(이론 분야에서는 처벌불원(합의)의 기초가 되는 피해 회복과 형벌목적 간의 관계 및 양형책임에서의 그 역할 검토, 실증조사 분야에서는 처벌불원과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합의)의 적정한 참작방안 검토(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인자의 운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양형기준에서 공탁의역할 및 기능, 재판절차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향 논의) ○ 합의 절차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안(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실천 필요, 구체적으로는 형사재판절차에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합의 절차를 정형화)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0			
내용의 완결성	0			
구성, 체제의 적정성	0			
참고문헌의 충실도		0		
학술적, 실무적 가치		0		
제출기간 준수	0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0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 ○ ○ ○ ○ ○ ○ ○ ○ ○ ○ ○ ○ ○ ○ ○ ○ ○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이해에 부용하기 위해 합의 및 처벌 의 파정을 어느 정도 정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사점을 도급 한행 형사함의 절차의 문제점을 병확히 파악하여 합의 및 처벌 의 전차를 정형화 및 법제도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합의의 과정이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의 2차나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실천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형사제관절차에서 형사조정를 도입하여 범행 당사자들 간의 합의 전차를 정형화시킬 것을 안함 -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합의전차 투명화, 법죄로 인한 분쟁의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현행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① 처벌불원, ② 적 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 3 로 설정하고 있음. 이중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인 '상당한 피북 인자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반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당한 피해회복의 징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징의규정 내용으로 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보임 - '상당한 피해 회복'의 징의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징의규정 내용으로 분이 고려할 만하다고 보임 - '상당한 피해 회복'의 집의 대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이느 정도로 이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게 다가을 뿐만 아니라만 배상해도 형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제자의 입장에서는 소액의 금전 배상만으로 형감경의 해택을 항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문제점을 명확히 함 - '상당한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심 법관과 범행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략적인 규정을 돌 필요가 있으므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만 '괴고인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처벌분원이나 실질적 피해 할 만도의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고만한 의의를 지난다고 생각됨 ○ 다만, 합의 절차의 정형화는 기존에도 제기되었던 주장이어서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유단의 필차의 점형화는 기존에도 제기되었던 주장이어서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시안은할 만하나 비교적 단순한 주장으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는 않았음. 나아가 법조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는데 가가 법조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는데 가가 법조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는데 한하나 비교적 단순한 주장으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들은 않았음. 나아가 법조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였는

	판사 10명, 검사 11명, 변호사 25명, 교수 30명, 대학원생 35명 등 표본수가 적고 대학원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4. 2. 14.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